

2025년 소규모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공고

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대를 위하여 『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』 제22조에 의거
『2025년 소규모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9일

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5. 1. ~ 2025. 12.
- 사 업 비: 300백만원
- 지원대상: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4년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아래의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
 - '24년도 사업 개시신고 수리를 한 경기도 소재의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소에 한하여 지원함
 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발전소는 지원하지 않음
 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
 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통연계비 지원을 받은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

2. 지원기준

- 지원금액: 사업자별 최대 100kW 이하 지원(kW당 최대 40,000원 지원)
 - 선정용량(kW) × 지원단가(원/kW)
 - ※ 지원단가(원/kW) = 총 예산(원) ÷ 총 선정용량(kW)
 - 용량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기준으로 하며 설비 용량의 소수점 이하는 지원금액 산정 시 제외함 (소수점 버림)
 - ※ 예시: 설비용량 99.8kW → 산정용량 99.0kW
 - 각 발전소별 합산용량 → 사업자 당 최대 100kW이하 지원
 - 단, “협동조합기본법”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의 경우 발전소별 합산 용량의 20%를 가산하여 보조금 지급(최대 120kW 이하)

■ 사업추진 예시

○ 사업비 / 총선정용량 : 300,000천원 / 13,000kW

○ kW당 지원금액 : (사업비) ÷ (총 선정용량)

※ 총선정용량은 가산용량을 포함하여 사업자별 선정된 용량의 총합

⇒ $300,000,000\text{원} \div 13,000\text{kW} = 23,076.92 \approx 23,000\text{원/kW}$ (10원단위 절사)

(예시1) 일반신청자 100kW(100kW) 발전소 지원 보조금 : 2,300,000원

⇒ $100\text{kW} \times 23,000\text{원/kW} = 2,300,000\text{원}$

(예시2) 일반신청자 99.9kW(99.9kW) 발전소 지원 보조금 : 2,277,700원

⇒ $99.9\text{kW} \rightarrow 99\text{kW}$ (소수점 아래 절사) $\times 23,000\text{원/kW} = 2,277,700\text{원}$

(예시3) 에너지협동조합 100kW 발전소 지원 보조금 (가산율 20%) : 2,760,000원

⇒ $\{ 100\text{kW} + (100 \times 20\%)\text{kW} \} \times 23,000\text{원/kW} = 2,760,000\text{원}$

□ 보조금 지급 :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홈페이지 안내 예정

3. 접수처 및 제출서류

□ 접수기간: 2025. 6. 23.(10:00) ~ 2025. 8. 1.(18:00) (신청기간 이외 접수 불가)

□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
○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(www.ggenenergy.or.kr) → 지원사업 참여신청 →
“2025년 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모집공고” → “참가신청”

□ 제출서류: [붙임 1] 참조

4. 유의사항

- 신청인(대표자)는 본 공고문, 붙임, 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,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, 상호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,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에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함
- 공고일 기준,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 여부 확인 가능해야함
-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발전소 사업자 대표 계좌로 하여야 함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음
-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로 간주함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공공재정환수법), 같은법 시행령, 및 「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,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,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2024년도 사업 신청 대상자가 금년도 사업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, 2025년도 사업은 경기도 경기도 예산 수립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- 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(조정) 될 수 있음
- ☐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(031-985-0504)으로 문의바람

6. 지원서식

- 붙임 1.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- 별지 1-1. 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 신청서
- 별지 1-2. 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
- 별지 1-3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
-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접속 공사비 영수증 사본
- 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(2024년 결재기준), 사용전 검사 확인증 각 1부
- 허가증 상의 사업자 대표 명의 입금 통장 사본 (법인의 경우 법인통장)
-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(공고일 이후 발급)
-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(해당시) 각 1부.
- 사업자 등록증 1부. 끝.

[붙임 1] 체크리스트

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(목록)

구 분	제출서류		비 고
신청서	1-1	지원 신청서 1부	별지 1-1 참조
	1-2	청렴 이행서약서 1부	별지 1-2 참조
	1-3	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서 1부	별지 1-3 참조
부대서류	발전사업 허가증 사본		
	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접속 공사비 영수증 사본		고지서,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
	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 사본 (2024년 결재공문)		시/군 발급
	사용전 검사 확인증 사본		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
	허가증 상의 사업자 대표 명의 입금통장 사본		법인의 경우 법인통장사본
	국세 납세 증명서		공고일 이후 발급
	지방세 납세 증명서		
	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※ 협동조합만 해당		각 1부 (정관상에 에너지 사업 명시 확인)
	사업자등록증		

※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,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

【별지 1-1】

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 신청서

사업자[발전소명칭]

[발전소]

신 청 인

대 표

생년월일

법인등록번호
(사업자등록번호)

주 소

휴대폰

- -

이메일

@

발전소 정보

사업장소

설비용량

kW

발전사업 허가일

년 월 일

개시신고 수리일

년 월 일

계통연계 공사비용

원 (V.A.T포함)

보조금 송금처
(사업자
본인명의)

금융기관

예금주명

계좌번호

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자대표) : (인 또는 서명)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

※ 동의사항

1.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,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.

신청인(사업자대표) : (인)

2. 경기도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,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.

신청인(사업자대표) : (인)

3.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모두 읽고 지급조건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동의함

신청인(사업자대표) : (인)

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, 제38조, 제39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부터 제40조)
제3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2.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3.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5. . .

대 표 : (인 또는 서명)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

